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55호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2.6.10. 개정)의 시행(’23.6.11.)으로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716, 2021.5.24.)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다. 의견 보내실 곳

- 1) 소속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 3) 전화/팩스 : 044-201-4260 / 044-201-5629
- 4) 이메일 : mjkim33@korea.kr